

P196.

内務部

1962.2.3

配信 配布処 参照

題目 韓日会談韓国側諮問委設置に対する僑胞輿論

韓日会談本会談時、在日僑胞地位問題に対する諮問機関として民団組織を代表して権逸、金光男、鄭仁錫、民団系経済人を代表して徐甲虎、李慶佑など 5 名が本国政府から諮問委員として委嘱されているが、最近日本の民団指導層では諮問機関程度で参与することを不満足に思い、積極的に同問題事前協議(作戦)に参与するようにと本国政府に要請する計画をしているが、万一それ以上の自決権と権限(分科委員会)が許容されるようになるならば、民団現執行部で考えているのとは異なる悪影響を招来する憂慮性が濃厚である。即ち日本側が暗に恐喝、脅迫、買収その他誘導工作などの術策に嵌って行き、かえって本意ではない同問題に対する事前協議の内容を漏洩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見なされるので、本国ではこのような環境にいる僑胞たちの立場を考慮して、現状そのままに諮問機関程度に参与させることが賢い策だろうという僑胞たちの言動だったので報告する。

長官命によって

治安局長 李スンドン

配布処 中央情報部長(第 6 局長)、外務部長官(政務局長)

P206. 代表としては難しいだろう。

“顧問”の資格で交渉の経緯、内容もある程度知らせてあげられる道を用意することを研究して見て知らせて下さい。

P207. 大韓民国外務部 着信電報

番号 : JAW-01364

日時 : 29 日 14 時 13 分

受信人 : 長官

発信人 : 駐日大使

対 WJA-01237 号

1. 代号で指示された僑胞代表の韓日会談法的地位関係会議への参加要請の件に関しては、居留民団中央総本部から 1964.1.9 付で当代表部に韓日会談法的地位関係会議に僑胞代表 1 名を出席させることを要請する公簡を送付して来たことがあります。
2. 当代表部はこれに対して、次のような回信を 1964.1.20 付で送付しました。
 - (1) 1964 年 1 月 9 日付で送付いただいた韓居中総発第 600 号に対する回信です。
 - (2) 韓日会談法的地位関係会合に僑胞代表を委員として参加させようという貴団の心中は理解できますが、韓日会談は政府対政府間の交渉なので在日僑胞を法的地位関係会合に参加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3)しかし当代表部は貴居留民団の意見を十分に斟酌して韓日会談法的地位関係会合に反映させるようにする意図なので、貴民団の名義で法的地位関係会合に提議しようとする意見書を当代表部に提出していただくよう願います。

(4)当代表部はまた貴民団と隔意ない意見を交換して、在日僑胞に対する要望事項を十分聴取しようと、韓日会談代表団と貴民団代表間の会合をしょっちゅう持つことを希望します。

3. 当代表部は JAW-01241 号で報告したように、既に 1 月 20 日に法的地位関係会合代表と民団法的地位対策委員たちとの懇談会を開催したことがあり、また JAW-01291 号で建議したことの法的地位関係会合李炯浩代表及び安世勲補佐(権泰雄補佐と替置した)を大阪と福岡に派遣し、在日僑胞との合議会を持ちましたので、ここに添言します。(駐日政)

受信時間 : 1964.1.29.PM2:33

P208. 大韓国外務部 発信電報

番号 : WJA-04092

日時 : 10 日 14 時 30 分

受信人 : 駐日大使

1. 64.4.9 の外務部次官と民団の僑胞法的地位要求関連陳情団一行との面談結果、「民団で選出する代表 1 名を代表団の一員として参加させ、法的地位問題の討議において顧問の役割をしても、日本側との交渉には参与させないことで了解したことを参考に通報する。(外亜北)

長官

(手書きで)

2.顧問としての任命手続き問題及び手当、そして同顧問の役割の限界等に関して研究報告願う。任命手続きに関しては貴下の名義であるのが良いと思料され、同顧問の任命は日本側に通告する必要はない。

P209. 大韓国外務部 着信電報

番号 : JAW-05084

日時 : 7 日 11 時 57 分

受信人 : 長官

発信人 : 駐日大使

対 : WJA-04092

代号で指示された法的地位関係民団顧問任命問題に関して、当地の意見を下のよう
に具申しますので参照なさり指示して下さるよう願います。

1.任命手続きにおいては本職(首席代表)の名義で居留民団中央総団長を「韓日会談在日韓人法的地位委員会顧問」として委嘱する。但し、中央総団長は当連職として委嘱する

のであるから团长更迭時には顧問職も当然更迭される。

2.同顧問は顧問職を遂行するにおいて主に下のような任務を担当する。

(1) 法的地位問題に関する在日韓人の希望事項の伝達及び建議

(2)在日韓人に対する被・幹展開

(3)代表団との意見交換のための会合への出席

3.但し、同顧問は下のような条件を遵守することにする。

(1)秘密文書(政府訓令、報告書等)の閲覧を禁じる。

(2) 韓日会談関係委員会には出席しない。

(3)代表部に常勤事務室は設置しない。

4.手当に関しては実質的に顧問職を遂行する場合、適宜な日当(交通費含む)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本部で同経費措置を取って下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駐日政)

1964.5.7.PM2:51

P210. 大韓民国外務部 発信電報

番号 : WJA-05149

日時 : 13日 10時 50分

受信人 : 駐日大使

対 : JAW-05084

代号法的地位民団顧問任命に関して、下のように回示する。

1. 任命手続き、担当任務及び遵守条件に関して本部としては異議ない。

2.任命対象者選定においては貴部が最も適当だと認める人事が選定されるようにするが、これに関しては民団側と十分な事前協調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為念添言する。

3.経費関係は交通費程度にするが、今回の支出額に関して貴部の意見を報告願う。

(外亜北)

長官

P211. 駐日代表部

駐日政 722-212

1964.5.25

受信 : 外務部長官

題目 : 法的地位委員会顧問経費

対 : WJA-05149

1.代号電文 3 項で指示された法的地位委員会顧問経費は月当たり 300\$を支払うよう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

2. 本件に関しては駐日総 152 号の 8 項で追加更正予算に反映できるよう、月当たり 300\$、7 ヶ月分 2,100\$を計上するよう建議したことがあるので参考にして下さい。終

5. 법적지위위원회 민단 고문 임명문제, 1961-64

167

227

0238

국가사건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회

4234. 11. 1

외국제 486호

수신. 외무부 장관

제목. 건의서 이첩

한겨울 총발 제 410 호 (4234. 10. 13) 접수된 최철 건의서 및 의장 연구 지시를 송부 하오니 연구 하여 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 기 . 한겨울 총 발 제 410 호 최 의장 연구 지시 각 1 부



외무국방 위원장 부관수장 무



외무부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68

228

0239

韓居 中總弁 共月四日
德仁日二九四年十月十九日

在日大韓文閣居署
田安 總部

外替部 去官
崔德新 畫

韓口會談 在日六方僑胞 代表하는
又田代表 送定 以 際 한 仰 請 的 件

聖스리은 革命 課業의 途 暢을 無 限히 期하
오며 窓下 果敢한 指導力에 對하여
台外 總 肆 斗 教 意를 表 示하
標 文 係 韓日 國交 正 常 化 之 兩 國 의 上 인

在日大韓文閣居署 田安 總部

02 0

169

229

10 91

存

地理ニ、經濟ニ、分殊の如ク、緊急한國際
情勢ニ、分殊の如ク、緊急한國際
立地關係ニ、以テ、不拘하고、十餘年을 걸쳐
難行을 거듭해 온 것은、實로遺憾스러운 일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日本側의 過去 尺의 對한 反者의 以리、大族的
優越感의 偏執한 差別精神의 終始
하여、僥倖 世運의 變遷 行爲의 終始
日本의 現實을 볼 때、우리를 軍只 專政의
外交의 排他性만을 指導할 수 없고、複雜한
心情의 弄을 以수나나.

今般의 多幸히도 救國의 最後의 手段으로
新生命 革命政權이 樹立되어 指導層의 努力
을 推進力과 刷新한 意氣에 以 國事가

하나하나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45년 1월 26일 國家再建과 在日 60만 僑胞을 爲한 檢討와 一刀 兩斷의 英智의 結論이 있어 이를 期待하

고 있다. 韓日會談에 있어서는 重要한 懸案中 特別히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60만 僑胞의 法的 地位와 生活權 處理問題는 實로 韓日의 直面向하고 있는 現實問題로서 尤도 之 始終如一의 精神에 對해 重大한 關心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永住權問題, 僑胞子女의 追索問題, 殘 幸失業者의 救養問題, 中小高工業者의 金融 問題, 財産擧發問題, 思想善惡等問題等

王正廷大韓民國駐日公使館

今이 尙하야 尙心乃至差別 待遇를 받고
 있는 僑胞社會의 實情과 그리고 日本當局
 의 動向을 多少의 알고 있는 우리들은
 有力한 立場에 놓여 있는 만큼 居留及田의
 基本態度를 行政權 對하야 張政權
 에 對하기까지 教次에 對하야 正武으로 在日六
 方의 法的地位問題에 對하야 及田代表
 選任을 請願한바 있으나 尙時政府의
 認識不足으로 尙然 殺되고 말았읍니다
 尙田의 全國血戰田員들은 本國政府의
 疑心을 多少의 一方 尙田中央部 不信
 과 尙田까지 云々 하야 國境의 處한바도 辭多
 하 以읍니다 尙田運 動方針의 基本의
 僑胞法的地位만 云々 尙田 尙田 尙田 尙田

什一〇〇〇中一名ツルニ代表田ハ参加リケル
 其ハ何レ向ニシテモ其業ハ其業
 ハモ何レ及田級級上ニシテ其業ハ其業
 何レ何レ向ニシテモ其業ハ其業
 直後何レ何レ向ニシテモ其業ハ其業
 思料何レ何レ向ニシテモ其業ハ其業
 正式ニシテ其業ハ其業
 其業ハ其業

醫藥社ハ其業ハ其業
 及田代表者正式代表田参加リケル
 深徳英新ツルニシテ其業ハ其業
 其業ハ其業
 其業ハ其業
 其業ハ其業

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中其業ハ其業

集中 少有一路 途 於 音 4

1914

9818

188



大
 新文
 部
 長
 官
 德
 新
 貴
 下



0243

175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GENERAL HEAD OFFICE

51, Kanatomi-Cho,
 Bunkyo-ku, Tokyo,
 Tel. Tokyo(329) { 0673
 0229
 0371

東京
 都文京区金富町五十一番地

在日本
大韓民國居留民団中央總本部

電話東京
 (929)
 〇〇〇
 三二六
 七二七
 一九三
 番番番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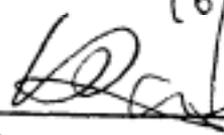
0244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비서실

429

韓日會談
의
2
4
種
表
冬
子
의
함
은

1. 韓日會談에 在日僑胞을 代表하는 民團代表의 參席要請也.
2. 李 張政權 때도 數次 本件 請願한바 效也. 默殺 되었음.
3. 本團은 僑胞 社會의 實情과 日本當局의 動向을 속속이 알고 있음.
4. 閣下의 深慮 英斷으로 正式 代表團의 參加를 仰請.

10/28


0245

177

232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의 刊布의 要請書

敬愛의 朴議長閣下

悠久의 民族史의 記念堂

母國의 革命의 偉大의 功

指導者 閣下의 愛國 愛族

精神의 上의 改革의 結果의 全

民族의 絶大의 支持의 唱

采亦川勝利之引導也
也 國際之自由陣
營之結束與友好關係之因
此及友態勢之實現外國內
之政治經濟社會文
化之統一之分野也此民主革
命態勢之整備也當此可不
撤書之在苦關斗之閣下以可
表心之敬意也慰勞之也答
之也司時行 告亦要請書也

은 드르며 하 告亦要請書을
을 리로 見되 告는 榮光 告는 아
告中이 아

民族의 歷史는 通世의 以는
千出之 其 辱後 華中을 外 破
滅的인 侵略行爲의 現實을 以
國際自由 平等의 強力인 國
族의 民族의 結束이 當無의
要求되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十萬在日 僑胞의 措向을 以
此 覺悟의 義務之 告는
外國의 革命精神과 國家施
策上에 是는 告는 告는 告는
이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이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이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은 此 告는 告는

이 告는 意義深大인 情勢을
이 告는 韓日 兩國間의 外交
諸般問題에 正當의 告는 告는
現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際의 國內의 告는 告는 告는
是內에 包는 告는 告는 告는
居住의 告는 告는 告는 告는
望은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은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朴議長閣下

現下은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이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閣下의 告는 告는 告는 告는 告는
韓日會談의 國利民福을

韓日會談中 國利民福之
爲此 成果 爲之 會談 之 事
到 可 是 希 求 於 此 也 曰 曰 曰

① 祝 詞 云 在 日 僑 胞 身 體 的 地
位 外 保 障 之 事 予 以 生 活
外 權 利 之 事 以 此 爲 旨 曰 曰

② 是 則 之 經 濟 的 地 位 外 如 是
是 向 上 升 的 所 本 國 外 僑 胞 間
以 自 由 之 留 工 活 潑 之 經 濟
交 流 之 事 國 家 再 建 之 以 外
其 餘 之 曰 曰 曰 曰 曰

1894
以 此 社 會 的 目 的 外 僑 胞 以 僑
胞 社 會 外 實 情 之 實 情 也
以 是 日 本 政 府 以 呼 訴 之 事
以 之 有 志 小 會 會 之 僑 胞

以 之 有 志 小 會 會 之 僑 胞

外 權 益 實 情 之 代 辦 也 已
外 權 益 實 情 之 代 辦 人 金
融 界 代 表 數 名 之 韓 日 會
談 外 委 員 之 事 曰 曰 曰

參 加 之 事 以 之 機 會 之 許
誠 切 之 事 全 體 之 關 下 曰 曰

要 請 三 日 之 事 關 下 之 美
處 然 之 事 是 也 曰 曰 曰 曰
之 事 曰 曰 曰

以 之 三 日 國 家 民 族 之 事 曰 曰
書 之 夜 不 撤 勞 苦 之 事 曰 曰
關 下 之 健 勝 之 祝 願 曰 曰
小 曰 曰

檀記四五年十月二十八日

在日韓國人信用組合總會

會長 朴漢植

東京韓國人商工會

會長 李康友

大政韓國人商工會

會長 徐甲虎

名古屋韓國人經濟會

會長 張永駿

國家再建最高會議

朴正熙 議長 閣下

韓居 中總弁 序 日 一 號
德 仁 日 二 九 四 年 十 月 十 九 日

海運最急會款
義兵正忠惠

唐入韓國
長 韓國總領事
長 韓國總領事



韓日會談 在日六方僑胞 代表 赴
及 田代表 遂定 以 官 赴 仰 請 外 件

聖 之 訓 是 革命 事業 之 途 暢 幸 無 限 也 其 照 此
台 外 教 練 外 教 意 是 表 示 也 其 外
標 記 係 韓 日 國 交 正 常 化 之 兩 國 外 上 之 人

正日大韓民國駐唐總領事官 李 承 燾 謹 啟

在日本大韓巨國居留日中中央編本音

地理上、經濟上으로는 勿論의 呼 緊急한 國際
 情勢로 보아는 分裂 進行 甚多 歟 定接한
 立地 關係에 의해서는 不拘하고、十餘年을 경과
 難行을 거듭해온 것은 實로 遺憾스러운 일이
 라고 하는 말을 수 없읍니다.
 日本國의 過去 尺의 對한 反者의 出리、大族의
 優越 感의 中 偏狹한 差別 精神의 終始
 故에 僞脫 世運이란 別 其 行爲 爲 所 犯 犯 是
 日本의 現實을 볼 때 우리 들은 單 只 善 政 及
 外交의 排他性만을 指導 할 수 歟 否 復 難한
 心 情의 中에 處 읍 니다.
 今 般의 多 幸히 是 救國의 最後 手段으로
 新 生 革命 政 治가 樹 立되 且 福 導 層 々 力
 推 進 力과 刷新한 意 趣에 依 國 事가 力

하나 하나 행동으로 하나 둘이 아니라 이따
 特別히 對日外交에 있어서도 國家母連斗在白
 六〇万僑胞을 爲하야, 細心한 檢査와 一刀
 兩斷의 決斷을 以는 結論이 있어야 할 것
 正의 意입니다.
 辨曰 會談에 있어서, 實는 重要한 懸案中
 特別히 日本에 居住하는 六〇万僑胞의 法的
 地位와 生活權 問題는, 實는 韓田의
 直向하고 있는 現實問題로써, 우리들은
 始終如一하야, 이에 對해 重大한 關心을 갖고
 正의 意입니다.
 永住權問題, 僑胞子女의 進學問題, 殆
 幸失業者의 就業問題, 中小高工業者의 金融
 問題, 財產搬送問題, 思想善導問題 등

任日本大韓民國居留民田中其條下

今에 尙하야 益前心乃至差別 待遇를 받고
 있노는 僑胞社會의 實情과 그리고 日本當局
 의 動向을 逐一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有力한 市場에 立脚하여 있는 僑胞及 田의
 基本態度를 何等의 專政權 濫用 擴張政權
 에 對한 戒心과 警戒에 正當으로 在日六
 方의 法的地位問題에 對하여 田代表
 任을 請願한 바 있으나 專政權이
 認識不足으로 全然 默殺되고 말았읍니다
 田代表가 全國 僑胞 田長들은 본國政府의 對
 疑心을 露骨히 一方 田中央 郵部 不信
 此點能하시云云하야 國境의 外에 許多
 의 以音하다 田運動 方針을 基本의
 僑胞法的地位에 對한 當事者의 立場에

188

1730

112

何れも中一各々の代表田の参加には
其の代表田の役員を委員とするが
和イロ、及び田畑の上の道路などに
中、各各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
直接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思料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正式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農協下の役員を指導する等田の役員に

五三六六農協役員田中央農協

集中
分科
一路
途
하
의
음
과
다

在日大韓國同胞會館中

190

0522

122

1

臣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외무 국방 분과 위원회

위원장 실

앞 李次官 李正 4294. 11. 24.

在日僑胞로서 會議代表團에
참가시켜 달라는 朝鮮의 建
議書가 있습니다.

참 考 可하시기 바랍니다.

柳揚 李正

191

0258

246

국가 개진 최고 회의

외무 국방 분과 위원회

■ 在日교주 宿望 429

1. 在日교주 法的地位의 保障으로서
生活과 權利를 지킴
2. 經濟的地位와 安定을 向노시키며
本口와 교주間의 自由스럽고 活潑
한 經濟交流를 가짐

上記目的과 意圖에서 在日교주 代
表를 韓日會談 委員 또는 音使
에 로서 參加할것을 建議하는 것
입니다

在日韓口人 信用組合 協會
192 會長 朴 漢 柱 外 3名

내제 3976 호

단기 4294년 11월 2일

외무부장관 귀하

진정서 이송 처리

별첨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신대

키부 에서 처리하여야 할 성질

의 것으로 사료되옵기 이에 이송하나이다

유첨

월 일한 결과를 보고하시압



내무부장관 한



亞洲課 文書取投			
6	79	248	정

0260

93

Sraga, Edward P 지어지나 한글 명판.

2. 사료
-1 면당 자료

1. 787

歎 願 書

吾輩等은 七旬老朽之物이라 天時를 얻은 革命政府의 精神의 協助에 不遜하고 肉體의 活動을 竭하여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多年前의 腐敗政治를 바르잡아 國民精神을 作興시켜 進炭에 바쳐있는 民生問題를 하루 速히 解決하시와 全世界를 通하여 遜色이 없는 高擧한 國家를 建設하시기를 祝願하시 마기 仰읍니다 그러하옵고 吾輩等은 日政時代에 半平生을 犧牲한 結果 老耄餘生을 恩館年金으로 自活하다가 解放後 拾七個 星霜間 生計本澳然카와 生不如死로 今日까지 生命을 維持하고있어 過去 李政權時代부터 韓日會談이 雜糅하여 오든바 會談 內容中 韓國國民의 財產請求權이 第一目標가 되어있어 其中 各項年金、國債保險額等도 包含 되어 있는 生覺하옵고 敢히 發言합니다 其時 日本人으로서 韓國에 서 恩館年金 받은 사람들은 解放後 自己나라에 가서 貨幣



194

價値에 따라 其時 年金의 手續式 받고 있든는 所 障도
 있습니다 畏濫하오나 今次 會談에서 財產請求權 獲
 得을 하시기든 九牛一毛의 金額이오나 吾輩의 十七年
 間 延滯金과 死亡할 時까지의 生活対策을 세워주시며
 手帳의 限이 없었읍니다 萬一 이와 같은 施策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오면 不得已 養老院에 入居를 身勢가
 될 사람도 不少하오나 特히 可憐한 情狀을 洞察하
 시와 今次 會談에 成功되시기든 河海같은 處分이
 사급의를 千萬 伏望하오나이다
 右 歎 願 帖

禮記 四二九四年

月 日

大邱市 大鳳洞 八九番地

全國 年金 受給 對像 者

代表

蘇

領

滿

崔

運

滿

申

鉉

195

12-1 <정 3>

내기관 8989K

1962. 9. 3.

발신처: 서울특별시

제목: 산업진흥법 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요청서

산업진흥법 제정안 제정요청서 제출 목적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민단 조직을 대표하여 산업, 민생, 정안, 민단계 경제인을 대표하여 서함으로, 이 경우 총 5명이 본국 입부로부터 총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민단지도층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참여권을 불만족하게 생각하여 결국적으로 총 문제사건임과 (특정) 대 상의 자부족 본국 입부의 요청을 하고 있는바 민단계 이상의 자격과 권한(본국위원권) 획득을 위하여 민단계 정안부에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를 느끼고 수의성이 높지 않다 즉 의견서를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공감, 협력, 특수 기하 유로공과 등 소수의 입부로부터 본국에서 총 문제의 대한 사건의 처리를 수 있게 되고 민단계 아닌가 감추되므로 본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근로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상 그 대로 전문기관 강도로 참여하도록 함이 현행일 것이 아닌 근로들의 언동이 옮겨 보고 함.

담당자	과장	국장	상무	사무	의장	관	공
이승우	김영	김영					김영

공공 명예 의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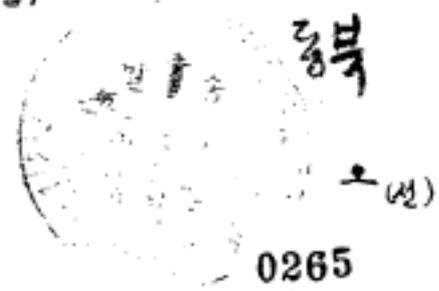
시 단 국 광 이 ▲ 동

비부거: 중앙정보부(제6국장), 외무부(제무국장)

196



250



0265

No.

舞臺中總第6003号

1964年. 1月9日.

在日大韓民國民居留民中央總本部

部長 金 今 石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丁一權 閣下

舞臺談에 關한 法的地位 委員會 委員 請이 件.

首題 之件에 關하여 去年에 於처는 會談을 通하여
이 會談이 있을 때 마다, 在日 僑胞 中 韓 語 法的
地位 委員會에 代表 1名을 參加시키 할 라는 要請은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주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한 일이라 안이 할 수 없읍니다.

아시다 싶이 在日 60萬 僑胞의 半世에 於처 於려
은, 이 法的地位 委員會를 設기 清算 함과 同時에

在日大韓民國民居留民中央總本部

1711

252

0266

時局에 居住하는 僑胞의 運命을 決定 する 이 重
 大한 時期에 法的地位對策委員會의 責任은 工야
 말로 重大大 當 勿 論이 어니와 在日僑胞 에게
 對한 關心도 날이 갈수록 높아 지고 있습니다.
 傳하는 바에 依하면 漁業問題를 除外 하므로서 기이
 프게를 념았다고 하는 說도 있음으로 在日僑胞의
 心情은 매우 焦燥한 感을 禁할 수 없는 바입니다.
 勿論 政府代表가 우리들의 權益과 子孫萬代의
 生存問題를 疎忽이 할 理가 없으니오 이는 法的
 地位委員會의 行終이 美를 거두며 何等 效果에
 하기 爲함이며 또한 對象인 當事者들의 意見을 反
 映시키는 同時에 在日僑胞 에 對한 安堵感을 주는
 意味에서 法的地位委員會에 必로 僑胞委員이
 參加할 수 있도록 措置를 주시기 望望 하나이다.
 以上

No. 10000
 1964. 1. 9
 135
 1964. 1. 9

韓居中總覽第600号

1964年1月9日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丁一權閣下

韓日會談에 關한 法的地位委員會의 委員
 要請의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拾余년에 걸쳐온 會談을
 通하여 이會談이 있을때마다 在日僑胞로 하
 여금 法的地位委員會에 代表 1名를 參加시켜
 달라는 要請을 해왔읍니다.

그러나 아즉 그實現을 보지못하고 있음은 분히
 遺憾한 일이라 안이 할수 없읍니다.

1964

아시다시피 在日60萬僑胞의 半世紀에 걸쳐 내려온
 法的地位는 過去를 켜켜이 清算함과 同時에 日本
 國에 居住하는 僑胞의 運命을 決定지우는 重要한 時期
 에 法的地位對策委員會의 責任은 그야말로 重大함은
 勿論이 어니와 在日僑胞의 이에 처한 關心도 날이 갈 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伝하는 바에 依하면 漢業
 問題를 除外하고는 거이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說도
 있음으로 在日僑胞의 心情은 매우 焦燥한 感을 禁할
 수 없는 바입니다. 勿論 政府代表가 우리들의 權益과 子
 孫萬代의 生存問題를 疎忽이 할 理가 있으리요 마는 法
 的地位委員會의 有終의 美를 거두어 더욱 効果 있게 하기
 爲함이며 또한 対象者인 當事者들의 意見을 反映시
 키는 同時에 在日僑胞에 처한 安堵感을 주는 意味
 에서 法的地位委員會에 必히 僑胞委員이 參加할
 수 있도록 措置해주시기를 要望하나이다.

以上

200.0000

100

국무총리
비서실

국비민 125.2 - 30 - (73-005)

1964. 1. 17

수신 외무부장관

제목 한일회담 법적지위 위원회 위임장식에 관한 민원처리 지시

1. 재일본 대한민국 거주민단 총합동본부 단장 겸급식으로
부여 한일회담 법적지위 위원회에 고로 1명을 겸급제 하여 달하는
건의인바 이첩하니 참고 바람. 갈

1129
4273

국무총리 명에 의하여

비서실장 인 윤



201

Mr. 全

253

0268

No.

留居中總覽第600号

1964年1月9日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団中央總本部

團長 金石

大韓民國
國務總理 崔斗善 閣下

韓日會談에 關한 法的地位委員會의 委員
要請의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拾余年에 걸쳐온 會談을
通하여 이 會談이 있을 때 마다 在日僑胞로 하
여 今 法的地位委員會에 代表 1名를 參加시켜
달라는 要請을 해왔읍니다.

그러나 아즉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한 일이라 안이 할 수 없읍니다.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団中央總本部

202

254

0269

아시다싶이 在日60萬僑胞의 半世紀에 걸쳐 내려온
 이 法的地位는 過去를 켜켜이 清算함과 同時에 日本
 國에 居住하는 僑胞의 運命을 決定지우는 이 重大한 時期
 에 法的地位對策委員會의 責任은 그야말로 重大함은
 勿論이 어니와 在日僑胞의 이에 처한 關心도 날이 갈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伝하는 바에 依하면 漁業
 問題를 除外하고는 거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說도
 있음으로 在日僑胞의 心情은 매우 焦燥한 感을 禁할
 수 없는바입니다. 勿論 政府代表가 우리들의 權益과 子
 孫萬代의 生存問題를 疎忽이 할 理가 있으리오마는 法
 的地位委員會의 有終之美를 거두며 더욱 効果 있게 하기
 爲함이며 또한 対象者인 當事者들의 意見을 反映시
 키는 同時에 在日僑胞에 처한 安堵感을 주는 意味
 에서 法的地位委員會에 必히 僑胞委員이 參加할
 수 있도록 措置해주시기를 要望하나이다.

以 上

대한민국 외무부

국문본

작성전보

번호: _____

일시: _____

수신인: _____

PTL418/22-13/NK2083

TOKYO 26/24 18 1425

MINISTER FOREIGN AFFAIRS CHEONG ILKWON SEOUL

JAEILKYOPU BUORJUOKJIIWA CHEGUMONJENEUN URI KYOPOEUI
 JASONMANDEEUI SAHWALMOONJE E KIBONJEOGIN HYOBJEONGIMURO
 JAEILGOMAN YOGUGA BANDEUSI KWANCHOLDEDOROK MANJEONEUL
 KIHAYA JUGIBARAN KEORYUMINDANDANJANG KIMKUMSUK

재일 교포 법적 지위 권유 문제는 우리 교포의
 자존만대며 사환 문제도 기본적인 협정 이유로
 재일 교포 요구가 반드시 관철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지인 관장 김동석

204 시외실

Mr. 손

장관	차관	국장	차관	관장	관	공람	공문
김동석	손	김				공람	공문

비서	총무	행정	재무
경무	문서	경기	교섭
정보	외전	국방	농림
방포	총무	상공	

인인

2024년 10월 26일

0275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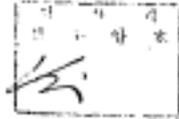
외신과

대한민국 외무부

발신정보

번호: WJA-41237
28120

수신처: 주일 대사



금번 자일 거부민단 총본부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한일회담 법적지원 위원회에 그토 대로 1명을 위원의
자격으로 합석시켜 줄것을 요청하여 왔는 바, 이에대한
국부의 견해를 보고하기 바랍. (외아복)

관 관

총무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양관	장관
/	/	/	/	/	/	/

205

257

대신	수신	수인처

0276

전 요 보인물전요

부 전 지

수 신

19

개 요
목 약

代表인서는 이여운것이니

* 顔合 答答으로

호사의 結構. 内容은

어는 程度. 안여운등

있는 것을 比연하

것을 研究하여

보시알

관계부처

협조처

전화번호 주부

②

발 신 206

0278

전남도의회
사무관
국무

번호: JAW-01364

작성일자

일시: 1964.1.29

수신처: _____

발신처: 주임사무

대 WJA-0137호

1. 당대표로서하신 보고자료의 관입회관 법적지위결정 회의에 의 일독
요점 견여필바되는 거부민안 중임흥본부로부터 12과, 1. 9 일지로 당대표부여
관입회관 법적지위결정회의에 그로자료 1 병을 첨부 신정 들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 하여 온바있음.

2. 당대표부는 이에대하여 다음과같은 회신을 1964. 1. 20 일지로 송부하였음

(1) 1964년 1월 9 일지로 송부 해주신 한겨울종합 제 600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입회관법적지위결정회의에 그로자료를 원함으로 일가사리오작하는 귀당의
신청을 이해할수 있으나 관입회관은 정부나 정부권의 그립아므로 제일 그로를
법적지위결정회의에 참석시킬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당대표부는 귀국국민민의 의견을 충분히 합각하여 관입회관 법적
지위결정회의에 반영시켜드루 할 의도이오니 국민민의 범의로서 법적지위결
정회의에 제의하고자하는 의견을 당대표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당대표부는 또한 국민단과 협의없는 의견을 모함하여 제일그로들에
대한 요망사항을 심본 정취로자관입회관 대표단과 국민단 대표간의 회합을
자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3. 당 대표부는 JAW-01241 호로 보고한비와같이 여며 1월 20 일에 법적
지위결정회의자료와 민당법적지위대표의원등회의 관입회를 개최한바있으며

또한 JAW-012이 호로 건의한바있는 법적지위결정회의자료 자료 및 인센은
보좌 (권역용 보좌와 마지키었음) 를 대민과 복강에 파견하여 제일그로와의
합의의를 관제하였어음게 이를 점언합니다. (주임장)

수신처
주임사무

미시	✓	문장	중립	사무
중립	○	문서	정기	조달
정보	✓	의견	국방	승인
방문		종무	상공	

수신처: _____
1964 JAN 29 PM 2 37

0279

작성일자 207

255

발신정보

대한민국정부
CONFIDENTIAL

번호: WJH20092
일자: 10/4/20

국무총리
국무총장
국무총서

수신처: 조익이사

1. (2.4.2.) 이 회부부 직원과 임원의 모호
부위지위 요구사항 변경한 점과
인간적성 선용하는 경우 직원 임원의 일원으로
참가시켜 부위지위 관계의 복의적이며 구분 책임을
이력, 임무와의 고산하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되었음을 참고로 통보함* (의아부)

모용문서도 새분류 (10. 12. 31)
0826
담담과인
권총
권총
권총

권총을 타자의 인명 피해 발생 ^{유단} ^{유단} 라고 등고문서 역화사 한과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후, 임명권과에 관하여는 귀하 명의로 하게 될 것으로 ^{의아부} ^{의아부}
경우 등고문서 인명 피해 발생에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6.6.30
208
259
0281

대한민국 외무부

상신아로 전보

~~CONFIDENTIAL~~

번호: JAW-0586 05084
일시: 071157

수신인: 장관
발신인: 주일 대사

102

대: WJA -04092

대외로 지시하신 법적지위관계 민관교은 임명문제에관하여 당지의 의견을
아래와같이 추천하오니 검토하시와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명 결사책임어서는 동적 (수석대외) 의 명으로 거부민단 중 총단장을
"한일회담 제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고문" 으로 위촉함. 단, 중 총단장은
당면적으로 위촉 하는것으로 단장 겸직시는 고문직도 당면비 겸직됨.
2. 동 고문은 고문직을 수행해왔어 주로 아래와같은 임무를
담당함. (1) 법적지위 관계에관한 제일한인의 희망사항의 건달 및 건의
(2) 제일한인의 대한 피.안 건제 (3) 대외단위의 의견교환을 위한 희망의
참석.
3. 단 동고문은 아래와같은 조건을 준수하도록함. (1) 비밀 준수,
(정부훈명, 보고서등) 의 엄밀한 준수 (2) 한일회담관계 위원회이상
접촉지않음. (3) 대외부에 상근 사무실은 설치지않음.
4. 수당에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고문직을 수행하는경우 적의한 임당
(거마비 포함) 을 지불하여야할것이나 본부에서 동경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바람. (주일성)

1946. 12. 31. (1946. 12. 31.)

예고: 재분류 66. 12. 31.

당 당 과 상 국 장 과 관 장 관
김영우 홍익 1.2 AD 김남규 Mr. Kwon (全) 46.30

비서	홍익	승용	재무
추진	분서	정기	조달
검표	회계	국립	승인
방고	공무	상공	

260

1946. 12. 31

~~CONFIDENTIAL~~

검토관 (1946. 12. 30) 0283

209

~~대한민국 외교부~~

발신정보

WSA-85/49
131050

수신인: 주일 대사

권리 번호
0 391

명: JAN -05004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대외 법외지위 진단 프로그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함.

1. 임명절차, 담당업무 및 준수 조건의 관하여 본부로서는 이의 없음.
2. 임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외부 각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사가 선정되도록 함인 바, 이에 관하여는 민간육과 충분한 사전 협조가 필요함을 워낙 염안함.
3. 경비관계는 거마비 검토로 하는 바, 원 지출액에 관하여 외부의 의견을 보고 바람. (외야복)

(2025.12.31)
국무외교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외교장관	외교장관	외교장관	외교장관	외교장관	외교장관
외교차관	외교차관	외교차관	외교차관	외교차관	외교차관
외교위원	외교위원	외교위원	외교위원	외교위원	외교위원

일련번호: (4, 12, 31.)

210

~~외교부~~

(12.30.)
 (12.30.)
 261 0284

필요 □ 보관용필요 □

~~CONFIDENTIAL~~

주 임 대 로 부

관리 번호 520

주임경 722 - 2/2

1964. 5. 25.

수 신: 외무부 장관

제 목: 법적지위 위원회 그문 경비

대: WJA-05149

담당	과장	국장	차관	관장	관	공람	외무부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1. 대로 건문 3장에서 지시하신 법적지위 위원회 그문 경비는 월당 300\$을 지불토록 하여주시압.
2. 본건에 관하여는 주임용 152호의 8장에서 추가개정 예산에 반영 될수 있도록 월당 \$300 . 7개월분 \$2,100 을 ~~계상토록~~ 계상토록 건의한바 있어오니 참고하시압. 단



직원으로 생활료 (1965.12.18) 주상 최광수

06.30

대 사 배 의 관

4 12 30

예고: 일반문서보 재분류 (66.12.31.)

211

~~CONFIDENTIAL~~

262

0285